##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01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 : 권명호・강기윤・구자근

김도읍 • 송언석 • 엄태영

유상범 • 이만희 • 최춘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위한 업무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,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 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 함(안 제19조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7항 중 "제8항에"를 "제9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)	제19조(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	⑦
가능경영 지원센터가 <u>제8항에</u>	제9항에_
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	
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	
있다.	,
<u>&lt;신 설&gt;</u>	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
	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
	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에 따
	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⑧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